

제 1 주제

##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

윤 석 춘

〈노동부산업안전국장〉

1. 현 황
2. 재해증가 원인
3.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 
재해예방 특별대책



## 목

## 차

1. 현	황	-----	7
2. 재해증가 원인		-----	10
2-1.	재해발생 여건확대		
2-2.	사회적 현상		
2-3.	재해예방 관리, 감독 능력의 한계		
2-4.	근로자 안전의식의 취약성		
2-5.	향 후 전 망		
3.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 특별대책		-----	13
3-1.	기 본 방 침		
3-2.	특 별 대 책		
3-2-1.	재해다발 제조업체 특별관리		
3-2-2.	건설업 분야 재해예방 활동강화		



## 1. 현 황

### \* 산업재해 발생현황 \*

- 지난해에는 산업안전국 신설과 지방관서 산업안전과 설치를 계기로 각종재해 예방시책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 
88년에 비하여 재해율 18.95  
재해자 8,202명  
사망자 201명 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.

국회에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하여 재해 예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.

- 그러나, 금년 1/4 분기중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
  - 건설업 분야에서 재해자수 2,480명, 재해율 26.92% 증가
  - 재해자 비중이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의 재해율도 당초목표 15% 감소보다 적은 7.4% 감소
  - 특히 대부분의 산업에서 재해율은 당초목표 15% 감소에 훨씬 미달한 2.17%로 감소
  - 오히려 재해자 2,117명, 사망자 231명 증가한 결과로 나타남.

○ 산 업 해 발생 현황

구 분	' 89. 1 / 4			' 90. 1 / 4			증 감 율
	근로자수	재해자수 (사망자)	재해율	근로자수	재해자수 (사망자)	재해율	
총 계	6,106,972	28,035 (335)	0.46	6,766,892	30,152 (569)	0.45	△ 2.17
광 업	88,194	2,288 (78)	2.59	71,696	2,087 (122)	2.91	12.36
제 조 업	3,198,063	17,190 (130)	0.54	3,339,847	16,816 (165)	0.51	△ 7.41
건 설 업	1,684,384	4,324 (68)	0.26	2,042,494	6,804 (110)	0.33	26.92
전기가스 수 도 업	38,080	47 (1)	0.12	38,355	64 (1)	0.17	41.67
운수보관 물 신 업	516,028	2,615 (65)	0.51	558,179	2,901 (96)	0.52	1.96
기 타	572,223	1,571 (23)	0.27	716,321	1,480 (45)	0.21	△ 22.22

\* 산업보험 요양 승인 기준

○ '90. 1/4분기 재해발생 현황

(단위 : 명)

년 도	계	광 업	제조업	건설업	전기가스 수 도 업	운 수 창 고	기 타	비 고
'90	30,152	2,087	16,816	6,804	64	2,901	1,480	
'89	28,035	2,288	17,190	4,324	47	2,615	1,571	
증감(%)	+7.6	-8.8	-2.2	+57.4	+36.2	+10.9	-5.8	

\*노동부 자료

○ '90. 1/4분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자 현황

(단위 : 명)

년 도	계	광업	제조업	건설업	전기가스 수도업	운 수 창 고	기 타
'90	569	122	165	140	1	96	45
'89	338	78	103	68	1	65	23
증감(명)	+231	+44	+62	+72	0	+31	+22
증감(%)	+68.3	+56.4	+60.2	+105.9	0	+47.7	+95.7

○ '90. 1/4분기 건설 물량 발주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89	'90	증감(%)	비 고
금 액	2조 2529	3조 9857	+76.9	

\* 건설협회 잠정 집계 자료

## 2. 재해 증가 원인

### 2-1. 재해 발생 여건 확대

-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공사 불량 폭주 (전년도 동기 대비 76.9%증가)
  - 주택 200만호 건설등 정부정책 공사 발주
  - 건설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한 가수요 증대
  - 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축수요 확대
- 안전관리 체제 및 활동이 극히 미흡한 영세 소규모 업자 급증
  - 안전관리 활동, 안전시설이 극히 저조
  - 여러개 현장 일부공종 도급시행 (근로자의 현장 이동이 잦음)
- 전문 기능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미숙련공의 위험 작업 증가
-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무리한 공기 단축

### 2-2. 사회적 현상

- 실직자들의 일시적인 취업장소로 활용
- 전문 인력의 건설공사 취업 기피 (기능 인력 부족을 가중)
- 대부분 성과급을 시행하므로 작업 수행에 부담을 주는 보호구의 착용을 거부하며,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

### 2-3. 재해예방 관리, 감독 능력의 한계

- 일선행정 기관의 전문 인력부족
- 공단의 건설재해 예방 활동의 한계성 (조직, 권한)



#### 2-4. 근로자 안전의식의 취약성

- 타성에 젖은 작업방법
- 무사 안일한 작업태도
- 건설재해 심각성 미숙지

#### 2-5. 향후 전 망

-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 분위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산업 가동율은 높아질 것이므로
  - 노후설비의 활용과 미숙련 근로자고용에 따른 위험요인은 더욱 증가.
  - 작업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로 인한 재해증가 우려
- 위험요인이 많은 건설공사 수주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 하는 재해자수 및 사망지수 급격한 증가우려
-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강화되었으나, 단시일내 재해예방 성과 기대곤란
  - 근원적 안전성 확보제도의 재해예방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
  - 사내 안전보건관리 체제, 권리감독자의 안전책임부여, 사내 안전보건관리 규정, 제정, 제도등도 금년 3/4분기 이후에야 재해 예방 효과 기대가능
- 따라서 현재의 재해발생추세가 지속되는 경우
  - '90년도는 '89년도보다 1만여명이 증가한 144천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율이 2.15%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
  - 재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한 금년재해 감소 목표 달성곤란

- 이에 따라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근로자의 인명과 건강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비등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우리 산업안전행정은 심각한 국면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.

### 3. 산재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 특별 대책

#### 3-1. 기본방침

##### 가. 노.사의 인식개선에 주력

-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행령, 시행규칙등 제도개선이나 기술개발보급 체제확립등의 수단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효과시현 가능
-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재해를 단시일내에 감소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, 노.사의 안전의식 제고가 급선무임
  - 취약업체 선정본부, 지방합동으로 특별관리
  -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로 의무이행을 촉구

##### 나. 특별관리 체제로 전환

-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유지
  - 본 부 : 비상대책반 설치 및 목표달성 독려
  - 지방노동관서 : 관내 재해원인 분석 및 취약업체 지도감독강화
  - 공 단 : 특별대책수립 및 기술인력 지원
  - 민 간 단 체 : 산재예방 분위기 확산 및 회원사 관리
  - 안전관리대행기관 :대행업체 책임관리
- 산업별특성에 맞는 목표관리
  - 건설업분야와 제조업분야 별도구분 관리
  - 재해증가분야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 집중

3-2. 특별 대책

3-2-1. 재해다발 제조업체 특별관리

가. 목 표

제조업체로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거나 취약요인이 많은 사업장

나. 대 상 선 정

○ 선정기준

- 1) '90년도중 4월말까지 재해자수 3명이상이거나 재해율 1 이상인 업체
- 2) '89재해자수가 5명이상으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상회업체
- 3) '89년이후 '90. 4월말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
(단, 교통사고, 광산, 고혈압등 단순사고 제외)
- 4) 전년도 재해자수 4명이상인 업체로서 '90. 4월말현재 전년동기 대비 재해자수가 증가한 사업장
- 5)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재해 발생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○ 선정해야 할 사업장

사 무 소 별

사 업 장 수

서울, 경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	6,7급 직원(과장제외)1인당
마산, 울산 지역소재 지방관서	30개소에 해당되는 업체수
기타지역소재 지방관서	6,7급 직원(과장제외) 1인당 20개소에 해당되는 업체수

\* 지방노동관서장의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업체부터 선정하여 감독관 담당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감독관별로 사업장을 배분

다. 업체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

○ 전담감독관 책임하에 업체별 관리대장 (별지1서식) 작성 비치

- 전년동기 대비 월별, 분기별, 반기별 재해발생 현황
- 산업재해취약 요인 (과거재해 및 점검기록 참조)
- 각종 점검결과 기록 및 유지

○ 업체별 책임관리 체제 확립

' 사업장별 전담감독관 지정

' 월별 사업장별 재해현황 분석

지방노동관서

' 재해증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

' 지역별 5급이상 전담직원 배치 (1인당 400개소)

부 부

' 월별, 지역별, 사업장별 재해 현황 분석

' 재해감소 목표 미달관서 순회지도

라. 특별안전보건 교육실시

○ 사업주 교육

- 대 상 : 취약업체 사업주
- 교육내용 : 재해예방 특별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무

○ 취약사업장 순회교육

- 대 상 : 산재취약요인이 많은 대규모사업장 근로자
- 교육방법 : 기술지도원 주관하에 순회교육 실시
- 교육내용 :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한 시청각 교육. 강의

마. 일제점검 실시

○ 점검반 구성

- 서울, 경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지역: 감독관 및 지도원  
(공단본부) 직원
- 기타지역 : 감독관

○ 점검사항

- 사내안전보건 관리체제. 교육실태
-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실태
- 기타 산재취약 요인과 예방조치등

○ 점검방법 : 생산현장 직접확인 점검 (별지 2서식)

\*사무실내 서류점검만으로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주의

○ 점검결과 조치

-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
- 법령위반사항 발견시 기시달한 "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조치 기준 ('89. 3. 23)"에 의거 의법조치
- 유해요인이 많고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공단에 안전진단 실시의뢰
- 재해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감독관이 매월1회이상 사업장 점검 및 재해 예방독려
- \* 매월 재해현황을 분석, 재해증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월 점검 대상으로 정할것

○ 기타참고 사항

- '90개선 계획수립 대상업체의 경우 개선계획 이행실태 확인에 주력
- '90년도중 기점검을 실시한 업체의 경우도 포함하며 특히 과거 점검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은 시정결과보고 및 종결 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전부 점검실시
- '90정기감독 대상업체로서 아직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감독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점검방식으로 실시
-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 감독관이 직접현지 확인 점검실시

바. 안전진단 실시

○ 대상 선정

- 선정기준
  - ' 일제점검결과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사업장 (기술적개선이 필요한 사업장)
  - ' '89재해율이 3 이상인 사업장
  - '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진단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\*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국고진단 (안전보건 기술진단)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

- 선정해야할 사업장수 : 사무소당 10개소 이상

○ 추진 방법

- 일제점검결과 진단이 필요한 사업장에 선정 본부에보고
- 공단본부에서 진단계획수립 및 일정통보
- 감독관 1인 및 전문가 3인으로 진단반구성 진단실시

○ 진단 내용

-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여부
- 시설, 공정, 작업환경등 기술적 개선사항
- 작업관리등 기타 관리적 개선사항



### 3-2-2. 건설업 분야 재해예방활동강화

#### 가. 재해다발 건설현장 특별관리 (지방)

- 대 상 : 공사금액 10억원이상 전국 사업장 (1,000개소)
  - 서울, 경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마산지역 : 사무소당 30개소
  - 기타지역 : 사무소당 15개소
- 선정기준
  - 재해율이 특히 높은 사업장
  - 공사착수이래 중대재해가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
  -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방 법
  - 감독관별 책임관리 현장 균등 배분 (가급적 건설안전전담감독관지정)
  - 업체별 재해발생카드 작성, 기록 유지 (별지 3서식)
  - 감독관 개별 분담사업장에 대한 매주 1회이상 점검 실시 (별지 4서식)
- \* 안전공단 기술지도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 유지
  - 건설현장 소장 교육
  -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강화 : 30억이상 214개소

나. 재해다발 건설현장 긴급점검 (본부)

◦ 대 상 : 30개소 (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)

\* 각 지방청별로 재해율이 특히 높거나, 중대재해다발 사업장중 5개소  
씩 본부에서 선정

◦ 점 검 반 : 6개조 (1개조 5명)

- 본부 산업안전과 직원
- 지방 사무소 산업안전 감독관
- 산업안전공단등 관련단체 전문요원

◦ 점검기간 : 별도지침 시달

◦ 내 용

-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여부 감독
- 중대재해 안전조치의 이행상태

◦ 조 치 : 법위반사안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

다. 지하철 및 신도시건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

◦ 관려공사 주관 시. 도. 지하철공사 및 해당 업체와 공조체제 유지

◦ 기 시달된 지하철 및 신도시건설 재해예방대책의 실시 지침에 따라  
철저히 지도, 감독.